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2.4.18 (수) 09:3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송장섭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정 현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4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0일

3. 제안 이유

-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공공기관 유치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,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투자유치 활동 중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조, 안 제38조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(안 제2조)
- 다.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 명칭 변경(안 제4조)
- 라.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(안 제37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투자 유치 활동중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

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지식경제부 고시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